

서초구립 신반포아크로빛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안 번호	9
----------	---

제출년월일 : 2018. 08. 24.

제 출 자 : 서초구청장

1. 제안이유

- 서초구립 신반포아크로빛 어린이집은 신반포5차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아크로리버뷰아파트 내 위치한 의무어린이집을 반포3동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서초구립 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어린이집명	주소	면적	층수	개원 (예정)	정원 (예정)	시설확보
서초구립 신반포아크로빛 어린이집	잠원동 64-8 (반포3동)	528㎡	지상2층	2018. 9월	53명	재건축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운영위탁)

○ 위탁기간 : 5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별표8의2

○ 위탁업무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사항

다. 위탁체 선정 : 공개경쟁모집에 의한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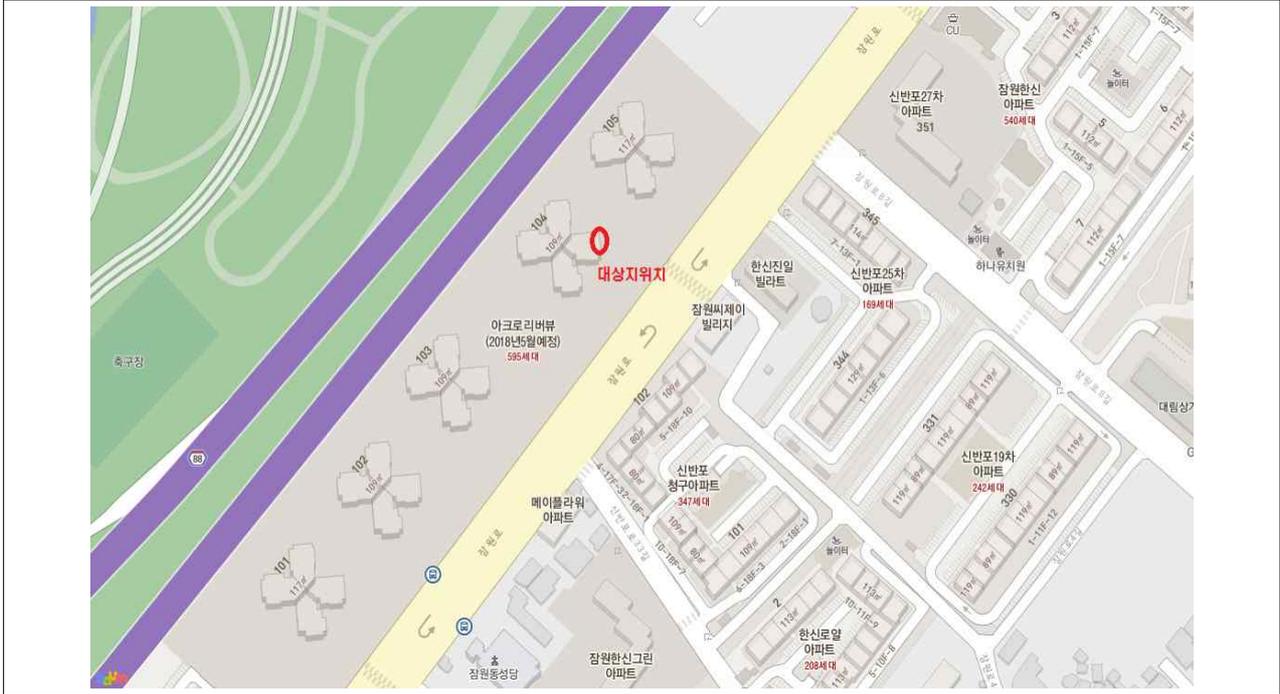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5조(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8조(위탁기간)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신반포아크로빛어린이집 위치 현황도

□ 지도



* 신반포5차아파트 재건축 단지

□ 현장사진

